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099	구자근의원	2024. 10. 31.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04.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 회 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12	김병기의원	2025. 09. 16.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 회 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경제재정소위(2025.11.19.),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경제재정소위(2025.12.04.) 및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2026.03.17.)에서 구자근의원·김병기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7.)에서 경

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통계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이에 현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법률 제 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1명”을 “2명”으로, “30명”을 “35명”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재정경제부장관</u>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 ----- ----- - <u>국무총리</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u>1명</u> 을 포함한 <u>3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재정경제부장관</u> 이 위원장이 된다.	③ ----- <u>2명</u> ----- --- <u>35명</u> ----- ----- <u>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u> <u>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u> <u>람이 공동위원장</u>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